

참고문헌 및 부록



참고문헌

[단행본]

- 김태호(2015), 『지방세개론』, 한국지방세연구원.
- 심영택(2014), 『알기 쉬운 지방세 이야기』, 한국지방세연구원.
- 심영택·오정의·김종택(2015), 『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』, 한국지방세연구원, 행정자치부.
- 전동흔(2015), 『지방세 실무』, 한국지방세연구원.
-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(2010), 『한국경제 60년사』, 한국개발연구원.

[논문]

- 김명변(2008) 「주택재건축관련 취득세 논의」 서울행정법원.
- 김현숙(2007) 「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.
- 이유찬(2005) 「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.
- 이영희(1996) 「지방세 중고세제도의 개선방안」 한국지방세행정연구원.
- 임경식(2011) 「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」 한양대학교 행정·자치대학원.
- 정지선(2011) 「재개발·재건축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」(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), 한국세무학회.

부 록

가. 지방세법 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~⑦ 생략</p> <p>⑧ 「주택법」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(이하 이 장에서 "주택조합등"이라 한다)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과 부대시설·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(이하 이 장에서 "비조합원용 부동산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</p>	<p>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~⑦ 생략</p> <p>⑧ 「주택법」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(이하 이 장에서 "주택조합등"이라 한다)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과 부대시설·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(이하 이 장에서 "비조합원용 부동산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</p>

나. 지방세법 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① 1.~7.(생략)</p> <p>8.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,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{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·지역아동센터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}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,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,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$\frac{\text{전체 주택의 취득}}{\text{당시의 가액}} = \frac{\text{취득 지분의}}{\text{취득 당시의 가액}} \times \frac{\text{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}}{\text{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}}$ </div>	<p>제11조 ① 1.~7.(생략)</p> <p>8.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{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·지역아동센터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}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,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,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$\frac{\text{전체 주택의 취득}}{\text{당시의 가액}} = \frac{\text{취득 지분의}}{\text{취득 당시의 가액}} \times \frac{\text{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}}{\text{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}}$ </div>

다. 지방세법 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)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"이란 1구(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건축물의 연면적(전용면적을 말한다)이 <u>60제곱미터 이하인</u>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	제26조(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)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"이란 1구(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건축물의 연면적(전용면적을 말한다)이 <u>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</u>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